

4-1-48 성인학습자 학사운영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”이라 한다.) 학칙 29조의3항에 의거 성인학습자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학칙이나 다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한 성인학습자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성인학습자란 ‘Long Education Project 심화 운영반(이하 BTS:Be The Stars 참여반이라고 한다)’ 운영에 동의하고,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, 성인학습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 및 성인학습 전담과정인 사회혁신리더학과에 입학한 자를 말한다. (2022.11.23.개정)

② BTS 참여반이란 루터대학교의 Long Education Project에 참여하여 학습하는 재학생을 말한다. (2024.03.29.개정)

③ BTS 참여반 재학생들은 매 학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각종 진단, 설문, 면담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.

제4조(성인학습자 관리위원회)

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① 성인학습자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② 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되고, 성인학습지원센터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, 외부 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. (2022.11.23.개정)

③ 위원회는 성인학습자 적응 및 학습 촉진과 관련한 선행학습학점 인정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.

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업무 담당자가 맡는다. (2022.11.23.개정)

⑤ 그밖에 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. (2022.11.23. 개정)

제5조(수업) ① 성인학습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은 학칙 및 선행학습 인정에 관한 규정과 원격 수업 관리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② 성인학습자는 우리 대학 선행학습 인정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, 전체 졸업 학점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단, 교양과목으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학처장의 승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. (2022.11.23.개정)

③ 성인학습자 수업은 원격수업을 위주로 운영하며, 교학처장의 승인을 통해 출석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. (2022.04.21. 개정), (2022. 11.23. 개정), (2023.08.02. 개정), (2024.02.21. 개정)

④ 본교와 학점교류협약이 이루어진 국내·외 대학의 원격강의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교과목 및 K-MOOC 교과목 등은 최대 9학점까지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단, 전공과목으로 인

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학처장의 승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. (2022.04.21.개정), (2022.11.23.개정), (2024.03.29.개정)

⑤ 성인학습자와 일반학생은 동일 교과목을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일반학생은 동시수업, 성인학습자는 비동시수업으로 운영한다. 단,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통해 수업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. (2022.02.10.개정), (2022.04.21.개정), (2024.03.29.개정)

⑥ (2022.02.10.개정), (2024.03.29.삭제)

⑦ 일·학습 병행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야간수업, 주말수업, 블렌디드러닝, 플립러닝, 하이브리드러닝 등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. (2023.08.02.신설)

제6조(평가) ① 성인학습자의 학업성적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특성에 따라 성적평가방법 변경시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성인학습자의 학업성적은 매학기별 정기평가에 의한 시험성적, 수시시험, 과제물, 구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종합하여 산출할 수 있다.

④ (2024.03.29.삭제)

⑤ 제5조 5항에 따른 교과목의 경우, 일반학생은 상대평가, 성인학습자는 절대평가를 시행한다. (2022.02.10.개정), (2022.04.21.개정), (2024.03.29.개정)

제7조(휴학) 성인학습자의 휴학은 학칙 제22조에 따르되, 질병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학 중 휴학기간이 총 4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학기의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별도로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교과목 구분) 교과목은 교양과목,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.

제9조(학기당 취득 학점) 학생은 매 학기당 15학점 이상 21학점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전 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3.8 이상인 자는 23학점까지 초과 취득할 수 있다.

제10조(계절학기) ① 계절학기의 개설과목의 수강인원이 15명 이상, 학내가상 과목은 수강인원 30명 이상일 경우 개설하며, 그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.

② 계절학기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료를 감액할 수 있다.

제11조(졸업요건) 성인학습자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8학기 이상 등록한 자
2. 130학점 이상 취득자

제12조(장학금)

① 성인학습자 장학금은 학칙 및 관련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. (2022.11.23.개정)

② 성인학습자는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. 단, 매 학기 평균 평점 2.5이상 취득하여야 하며(입학 첫 학기 성적 제외), 미 충족시 다음 학기 장학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2조2(면학장려금)

성인학습자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에게 면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성인학습자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급이 불가하다. [본조신설 2022.11.23.]

제13조(평가) ① 대학의 성인학습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·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
② 자체평가의 기준,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학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4조(책임시수) 성인학습과 일반학생이 함께 합반으로 운영한 교과목의 경우 책임시수는 1개 교과목 시수만 인정한다. [본조신설 2022.02.10.]

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